

##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정	1991.	4.	12.	조례	제1156호
개정	1992.	10.	1.	조례	제1178호
개정	1995.	3.	18.	조례	제1355호
개정	1996.	9.	20.	조례	제1513호
개정	1999.	1.	18.	조례	제1612호
개정	2008.	5.	9.	조례	제2090호
개정	2008.	7.	7.	조례	제2105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94호
일부개정	2022.	10.	20.	조례	제34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안양시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10. 20.>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10. 20.>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0. 20.>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2. 10. 20.>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 10. 20.>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7. 7., 2022. 10. 2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 1. 8.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9.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9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